

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

2025학년도 하이테크 단기과정 모집요강

(주소)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(대표번호) 031-739-4000 (홈페이지) kopo.ac.kr/seongnam

1

모집학과 및 모집인원

(단위 : 명)

학과명	직종명	모집정원	모집인원	모집 1차			비고
				소계	일반	균형	
반도체공정	반도체장비운용	20	22	22	16	6	단기 3개월

※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대학 사정에 의해 학과 통폐합이 있을 수 있음

2

전형일정

모집	원서접수(인터넷)	면접	합격자 발표 및 등록
하이테크(단기)	2025.06.06.(금) 10시 ~ 2025.06.20.(금) 14시	2025.06.23.(월)	2025.06.25.(수) 14시 ~ 2025.06.27.(금) 17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원서비 및 전형료 무료 ■ 인터넷 원서접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수방법: 성남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- 원서접수 마감: 원서접수 마감일 17:00까지 ■ (입학원서 외) 서류 제출 마감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접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- 제출 주소 (13122)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,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교학처 (하이테크과정 입학담당자 앞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면접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별 면접 시간 및 장소는 면접일 전일 캠퍼스 홈페이지에 공지되며, 개별 공지하지 않음 -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됨 - 캠퍼스 사정에 따라 면접일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음 ■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(본인 직접 확인 개별 공지 없음) ■ 자율모집: 모집 미달 시 시행 예정 	

※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입학전형관리(소)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



구분	지원자격				
일반선발	<p>가. 연령 및 학력 등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7 320 1409 712"> <tr> <td data-bbox="327 320 459 358">입학연령</td> <td data-bbox="459 320 1409 358">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27 358 459 712">학력 및 자격증</td> <td data-bbox="459 358 1409 712"> <p>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, 이와 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2년제 대학 이상 졸업(예정)자) 2~6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- (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) 3~6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- (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) 위와 동등 수준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(학점은행제는 8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해당) - 수료(예정)자는 수료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, 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학년이 표기된 재학(재적)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▪ 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<p>* 동일 및 유사 계열 판단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준용</p> </td> </tr> </table> <p>나. (공통)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과 학력(또는 자격증)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② 비정규 형태 근로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일용직)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- (단시간근로자)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- (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)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③ 개인사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공통)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 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“종합소득세” 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(소득금액증명 확인) - (부동산임대사업자) 최근 1년간 「부가가치세법」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- (부동산임대업 이외)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(수입금액)이 4억원 미만인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※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4억원 미만인 사람 ④ 노무제공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 ⑤ 법인의 대표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⑥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소득세법」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⑦ 「난민법」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함 ⑧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- 귀화 허가를 받은 자 ⑨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 (야간·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) ⑩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<p>*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여야 함</p>	입학연령	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	학력 및 자격증	<p>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, 이와 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2년제 대학 이상 졸업(예정)자) 2~6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- (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) 3~6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- (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) 위와 동등 수준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(학점은행제는 8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해당) - 수료(예정)자는 수료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, 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학년이 표기된 재학(재적)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▪ 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<p>* 동일 및 유사 계열 판단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준용</p>
	입학연령	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			
학력 및 자격증	<p>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, 이와 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2년제 대학 이상 졸업(예정)자) 2~6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- (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) 3~6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- (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) 위와 동등 수준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(학점은행제는 8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해당) - 수료(예정)자는 수료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, 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학년이 표기된 재학(재적)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▪ 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<p>* 동일 및 유사 계열 판단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준용</p>				
기회균형 선발대상	<p>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</p> <p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</p> <p>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·가족</p> <p>라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</p> <p>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</p> <p>바. 「군인사법」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장기 복무(10년)한 전역 예정 군인</p>				



- ※ 개인사업자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4억원 미만인 자
- ※ 간이과세자: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(부가가치세 포함)가 4천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
- ※ 노무제공자: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종사자, 프리랜서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

4 전형방법

가. 성적반영 요소 및 배점

구분	계	성적반영 요소		성적 적용 비율
		필기(점수)	면접(점수)	
하이테크	100	-	100	면접 100%

나. 진행내용 및 방식

전형	실시내용	진행방식	비고
면접고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NCS 영역 기반 종합면접 * 의사소통자기개발대인관계-직업윤리 등 • 학업 및 취업의지 지원확인에 대한 이해도 • 학과 특성에 따라 수학 가능 여부 판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접위원 2~3명/1실당 • 면접문항 1인당 3~5가지 질문 • 소요시간 15분 이내 	

- ※ 면접전형 불참 시에는 불합격 처리
- ※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미지참자 응시 불가

다. 가산점 대상자 및 적용 비율

- 난민, 결혼이민자 등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 다문화가정의 자녀, 학교 밖 청소년: 5%

라.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

구분	내용
선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합격자는 학과 및 모집전형별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• 최초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합격후보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총원합격자 선발 • 총원합격자 등록기간 이후의 결원은 다음 모집차수로 이월하여 선발 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접수 후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• 제출서류가 위변조되거나 불법한 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학을 취소 • 입학전형 개별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, 사정방법 등 본 대학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(소)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
동점자 처리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득점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순위 의사소통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- 2순위 자기개발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- 3순위 대인관계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- 4순위 직업윤리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



- 제출 서류는 **6개월 이내 발급본** 제출이 원칙(예외 별도 표기 서류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본 제출)
-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
-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모든 제출 자료(서류)에 대해 추후 위·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됨
- 산업체 경력자의 경우 재직·경력기간은 원서접수 전일 기준으로 산정
- 재지원 수험자 중복 서류 면제 가능
- 서류 제출방법: 등기우편, 방문 제출 등
 - (13122)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,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교학처 하이테크과정 입학담당자
- 위변조 및 식별 불가능한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미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
가. 공통서류

자격 구분	제출서류		비고(발급기관)
모든 지원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학원서 ■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학 양식 ▶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 및 동의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
	2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(예정)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졸업(예정)증명서 * 졸업예정자는 입학 당일까지 졸업증명서 필수 제출 ■ (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) 학년이 표기된 재학(재적)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학위취득 기관 (국가평생진흥원 발급 증명서 포함) ▶ 외국소재 대학의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필요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아포스티유 확인 ② 영사 확인 ③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·학위인증센터 발행 인증보고서
	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(예정)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료(예정)증명서 ■ 성적증명서 	
	전문대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서류 인정 - 학위증, 학위기, 학위수여(예정)증명서 등 	
	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실무 종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직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 	
개인사업자	개인 사업자 (부동산 임대업 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일반)사업자등록증명원+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■ (간이)사업자등록증명원 ■ (면세)사업자등록증명원+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■ (휴업)휴업사실증명원 	
	부동산 임대 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일반)사업자등록증명원+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■ (간이)사업자등록증명원 ■ (면세)사업자등록증명원 ■ (휴업)휴업사실증명원 	
법인 대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자등록증명원 ■ 소득금액증명원 		▶ 근로복지공단
고유번호발급 단체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유번호증 ■ 소득금액증명원 		
자영업자 중 고용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승인 통지서 		



피보험자			
노무제공자	■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	▶ 산업체	
비정규형태 근로자	■ 비정규 형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		
졸업까지 남은 연한 2년 이내인 자	■ (전문대학) 재적증명서 ■ (3년제대학이상)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재적과 학년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증명서 인정	▶ 해당 대학	
난민	■ 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		
결혼이민자 등	결혼이민자	■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	▶ 해당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 생략 가능 ▶ 시/군/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발급 ▶ 출입국관리소
	귀화자	■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■ 기본증명서(국적취득, 상실 특정 발급)	

- ※ 고용보험 180일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” 필히 제출(3회 수강자에 한함)
- ※ 개인사업자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4억원 미만인 자
- ※ 간이과세자: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(부가가치세 포함)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
- ※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(예외 별도 표기 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본 제출)

나. 기획균형선발 서류

- 공통서류 외 다음 해당하는 서류 제출

자격 구분	제출서류	비고(발급기관)
수급권자	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(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)	▶ 시/군/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(원서접수일 이후 발급)
장애인	■ 아래 서류 중 택 1 -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등록증(수첩, 복지카드) 사본	▶ 행정복지센터
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	■ 아래 서류 중 택 1 -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- 독립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원 -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원 - 보훈보상대상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원 - 5·18민주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원 - 특수임무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원	▶ 국가보훈부 및 보훈(지)청
중장기복무 제대군인	■ 아래 서류 중 택 1 - 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 -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	▶ 국가보훈부 및 보훈(지)청
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	■ 한부모가족 증명서(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) ■ 가족관계증명서(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)	▶ 시/군/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(원서접수일 이후 발급)
전직지원교육대상자 중 장기복무제대예정군인	■ 전역예정증명서 ■ 전직기본교육수료증	▶ 병무청, 국방부

- ※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(예외 별도 표기 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본 제출)



다. 취약계층 등 가산점 관련 서류

○ 공통서류 외 다음 해당하는 서류 제출

지원자 구분	제출서류		비고(발급기관)
난민	■ 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		▶ 신분자격별 서류 제출 시 서류 생략 가능
결혼이민자 등	결혼이민자	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	▶ 신분자격별 서류 제출 시 서류 생략 가능 ▶ 시, 군, 구청 또는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▶ 출입국관리소
	귀화자	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■ 기본증명서(국적취득, 상실 특정 발급)	
다문화가정의 자녀	■ 가족관계증명서 ■ 부(또는 모)가 귀화자인 경우 부(또는 모)의 기본증명서(상세)		▶ 시, 군,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
학교 밖 청소년	■ 학교 밖 청소년 추천서		▶ 학교밖청소년센터
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■ 보호종료확인서 1부		▶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지원센터 등
저탄소 관련 경력자	■ 직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		▶ 그린반도체설계과 해당

※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지원자 본인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

6

지원자 유의사항

유의사항	내용
접수취소 (변경) 불가	■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폴리텍 대학 간 복수지원 가능	■ 폴리텍 대학 간 복수지원 제한 없음 - 등록 및 등록포기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. 단, 이중등록 금지 ■ 동일한 캠퍼스·모집과정·모집(과정)차수에서 한 개 학과만 지원가능
면접 불참자	■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, 지원시 캠퍼스의 면접일정 확인 바람
전화번호 정확히 입력	■ 전화충원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(추가연락처 포함)를 원서접수 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충원합격자 개별통보(전화충원 시) 시 연락시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된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
필수(추가)서류 제출	■ 원서접수 완료 후,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수험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서류미제출자 및 서류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함 ■ 제출서류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,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함 ■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기회균형선발지원자	■ 기회균형선발로 지원한 경우, 해당자격의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



유의사항	내용						
선발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03년 이후 폴리텍대학에서 개설·운영된 직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자. 미수료(중도 탈락 등)한 경우도 훈련횟수에 포함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폴리텍대학 개설과정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과정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직업교육과정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기술과정 (단기과정 포함) · 하이테크과정 (단기과정 포함) · 일반계고위탁과정 </td> </tr> <tr> <td>재취업과정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중년특화과정 (단기과정 포함) · 여성재취업과정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2년제학위과정, P-TECH과정, 학위전공심화과정, 기능장과정,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등 재직자 대상 교육 제외 ※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(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)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■ 「공무원연금법」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■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제외 대상 아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을 적용받는 사람 -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 ■ 「국민평생능력개발법」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·용자·수강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■ 「고용보험법」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(또는 사업)에 참여하는 사람 ■ 입학전형관리(소)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	과정	내용	직업교육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기술과정 (단기과정 포함) · 하이테크과정 (단기과정 포함) · 일반계고위탁과정 	재취업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중년특화과정 (단기과정 포함) · 여성재취업과정
과정	내용						
직업교육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기술과정 (단기과정 포함) · 하이테크과정 (단기과정 포함) · 일반계고위탁과정 						
재취업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중년특화과정 (단기과정 포함) · 여성재취업과정 						
합격/입학 무효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학원서, 학교생활기록부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위·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자 - 합격 또는 입학한 후라도 사실조회 결과 지원자격 미달인 자 -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-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자 - 폴리텍대학 내 과정구분 없이 이중등록이 된 자 -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					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과별 모집정원의 50%미만 등록 시 해당학과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■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입학전형관리(소)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■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						
문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과 문의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도체공정: 031-739-4079 ■ 입시·등록 문의전화: 031-739-4018 						



7

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

가. 합격자 발표 및 총원

구분	모집1차
최초합격자 발표일	2025.06.25.(수) 14시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합격자 발표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하지 않음 ■ 총원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또는 지원자 연락처(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본인 전화번호)로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화 이외의 연락수단(이메일 등)을 통한 통보는 실시하지 않음 ■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등록 또는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총원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비합격자의 경우 총원기간 내 합격 연락이 갈 수 있으니, 사전에 등록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■ 총원합격자 개별 통보 시 대학의 3회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불가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총원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화통화 불가 및 연락처 변경, 기재 오류 등으로 발생된 지원자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■ 연락처 변경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학처로 유선 연락 및 변경 요청(☎031-739-4018)

나. 등록방법 및 등록기간

구분	모집1차
최초합격자 등록기간	2025.06.25.(수) 14시 ~ 2025.06.27.(금) 17시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홈페이지 입학관리 메뉴 합격자 조회에서 "온라인 등록원(서약서)"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중등록 금지: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 1곳에만 등록해야 함, 이중등록 사실 확인 시 합격 무효 ■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추가 연락 없이 입학을 취소함

8

등록포기 안내

구분	내용
등록포기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방법: 온라인(홈페이지)으로 본인이 직접 등록포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학 홈페이지-입학안내-면접합격등록-합격자 조회등록-로그인-등록확인 탭-등록포기원 제출 ■ 등록포기 신청이 승인처리 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람



1. 학과안내

학과	내용
반도체공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학과소개) TLM pattern • MOS capacitor • MOSFET 제작 및 분석을 통해서 반도체 공정 및 소자 전문 인력 양성 ▪ (주요 취업처) 삼성 파운드리, ASML, Onsemi, AP시스템, TEL, 에드워드 펌프, Parker, ACM Research Korea, 코미코 등 IDM 및 장비회사

2. 기숙사 안내

수용인원	기숙사비	문의
225명 (하이테크 40명)	무료	교학처 031)739-4018 사감실 031)739-4019(16시~익일 9시)

※ 원거리 거주자 순으로 선발

※ 기숙사 사정에 의하여 근거리 거주자(성남, 수도권 등)는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

3. 하이테크과정 혜택

- 교육훈련비 전액 국비지원(교육훈련비, 실습비, 식비 등)
-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(이론, 실기 응시료 모두 1회 지원)
- 과정 수수료 후 취업연계 및 사후지도
- 희망자에 한해 기숙사 제공(원거리 학생 우선 배정)
- 훈련장려금(훈련수당, 교통비) 지급(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일 경우)
 - 훈련수당 : 훈련회차 구분없이 동일금액 지급
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: 출석 1일 10,000원(월 20만원 한도)
 - 그 외 훈련생: 출석 1일 3,300원(월 66,000원 한도)
 - 교통비 : 출석 1일 2,500원(월 5만원 한도, 기숙사생 미지급)



4. 오시는 길

○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



대중교통			
교통편	노 선	오시는 길	
지하철	8호선(산성역)	1번 출구 남한산성 방향 250m	
버스	시외버스	성남 야탑종합터미널 하차, 분당선 복정역 환승, 8호선 산성역 하차	
	성남 시내 버스	2, 2-1, 200, 300	산성동 버스종점 하차
		88, 88-1 33-1, 4419	대학 정문 하차
기차	SRT(수서역)	분당선 복정역 환승, 8호선 산성역 하차 (약 20분 소요)	

